##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66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민형배・이개호・송재봉

윤종오 · 김재원 · 황운하

김문수 • 박홍배 • 윤준병

윤종군 의원(10인)

#### 제안이유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정치검찰 퇴출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단일형 위계체계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검찰은 모든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담보 장치가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도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기소에 대한 중립성 및 공정성 우려하는 목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함(안 제26조의3).
- 다.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 라.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 마.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4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를 "사항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로 한다.

제4장의2(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의2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6조의2(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8장의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해서는 제3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제26조의3(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자의 자격)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제33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 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 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 1. 판사 · 검사 · 변호사
  -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 제26조의4(겸직의 제한)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7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선 전부터 제1항(「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 제26조의5(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환) ①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으로 본다.

제26조의6(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퇴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 1. 제26조의4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 2.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제31조 중 "제27조"를 "제26조의3제2항 · 제27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검찰총장의"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로, "검사의 보직을"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차장검사의 임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포함한다)을 들어야 한다.

제39조제1항 중 "검찰총장은"을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으로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검사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수 없다.

제8장(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

- 제55조(선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 거로 선출한다.
- 제56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사무 중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선거구가 둘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57조(선거구)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 제58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62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 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 제60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

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제61조(당선인의 결정·통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62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하여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와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82조의 7, 제85조, 제86조(제2항 제2호 단서 · 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 까지,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1 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51 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 의2, 제158조의3, 제159조,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 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 제191조의2, 제192조부터 제206조 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39조 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제243조부터 제262조까 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 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 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검찰청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 다.
-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검찰청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제외한다)"으로 본다.
-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검찰청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검찰청법」 제59조제1항"으로 본다.
-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公衆衛生營業所"는 "공중위생영 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 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10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

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검찰청법」 제60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 순"으로 본다.

-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公務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검찰정 검사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와 「공직 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 "죄" 또는 "범죄"에는 "「검찰청법」 제65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검찰청법」 제65조"로 본다.
-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 2제1항의 "선거범"에는 "「검찰청법」 제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 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7항의 "이 법"에는 "「검찰청법」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제63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인수위원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

람을 제3항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제6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장 벌칙

제65조(벌칙)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의 실시시기 및 임기의 개시) 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03 조제1항에 따라 2026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어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에 임명될 사람의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 제3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 및 소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 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3항,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어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에 임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검사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	제24조(부장검사) ①
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	
하여 부를 둘 수 <u>있다</u> .	<u>있으며, 부의 설</u>
	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	제26조(직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	
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	
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	
한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정한	<u>사항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u>
다.	<u>방검찰청 검사장이</u>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	②
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u>대통</u>	<u>정원의 범위에서</u>
<u>령령으로</u> 정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③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u>대</u>	<u>정원의 범위에서</u>
<u>통령령으로</u> 정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④·⑤(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장의2 지방검찰청 검사장

<신 설>

제26조의2(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8장의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 는 4년으로 하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 대해서는 제3 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제26조의3(지방검찰청 검사장 후 보자의 자격)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제3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후 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 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 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 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의 직(職)에 10년

<신 설>

- 이상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 수 이상의 직
- 제26조의4(겸직의 제한) 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제27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선 전부터 제1항(「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 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 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 제26조의5(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환) ①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 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다.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 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6조 •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 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 年數)를 합산한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 ① -----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u></u> 질 º	નો	반하	·지	아니	하	느	범	위	에
	<u>서</u>	Γ	주민	소	<u></u> 한에	관	한	법	률	
	<u>의</u>	시	• 도	.지	나에	관	한	규	정	을
	<u>군</u>	용한	다.	じ	나만,	Ó	]	법	에	서
	٦Ξ	공직	선거	법_	을	-	존용	할		때
					관형					
					구직신					
					르게					
					법어					
					」의					
					. 본					
제					 검찰		검	사	장	의
					 찰청					
					<u></u> 어느					
					<u>'</u> 직어					
					 ∦1항					
				, -	, _ 0		<u> </u>	<u>, , , , , , , , , , , , , , , , , , , </u>	_	<u> </u>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의3제2항·제27조----

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신 설>

② (생략)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 사를 한다.

②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 방검찰청 검사장의----제23조 제1항에 따른 차장검사의 임명 을----.
-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 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지방검 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 청 검사장의 의견을 포함한다) 을 들어야 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 장은----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44조의3(검사의 공직후보자등 록 제한) 검사로서 퇴직 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제8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 제55조(선출) 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신 설>

<신 설>

제56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지방 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사 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 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선거구가 둘 이상의 시·도선 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지정한 시·도선거 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7조(선거구) 지방검찰청 검사 장은 해당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제58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 지 등) ① 정당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 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

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 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 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제62조제1
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 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직을 가 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 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60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 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 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 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 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 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 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 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신 설>

<u>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u> 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 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61조(당선인의 결정·통지)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 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장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 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제62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

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 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 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 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 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 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 2조의4, 제82조의5, 제82조의 7,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 서 · 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 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 지,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 109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 111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 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 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51조부터 제15 4조까지, 제154조의2, 제155조 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8조의3, 제159조, 제161조 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 1조, 제191조의2, 제19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 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39조

까지, 제239조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제24 3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 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 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 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 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 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 · 도지사 및 시 · 도지사선거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 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

 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호에 따른다.

-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 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 서류 및 「검찰청법」 제26조 의3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 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 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는 "「검찰청법」 제59조제1 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 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 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 <u>각각 "증명서류 및 「검찰청</u>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 다.
-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 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검찰청법」 제59조제1항"으로 본다.
-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公衆衛生營業所"는 "공중 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 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 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 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10 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 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검찰청법」 제60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 로 본다.
-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중 "公務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

- 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 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검찰정 검사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 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 (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 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 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으로 본다.
- 11.「공직선거법」 제14장의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구역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

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와 공직선거를 동 시선거로 본다.

-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 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 ·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 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검찰청법」 제65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검찰청법」 제65조"로 본다.
-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 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 에는 "「검찰청법」 제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 한다.
-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

<신 설>

1항·제2항·제7항의 "이 법" 에는 "「검찰청법」의 지방검 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규 정"을 포함한다.

제63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
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
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들수 있다.

- ② 인수위원회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

<u><신 설></u> <신 설> 점찰청 검사장 당선인이 추천 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른 위 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 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 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제9장 벌칙</u>

제65조(벌칙) 제58조를 위반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